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2가단5488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탈퇴) 신용보증기금

원고승계참가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강수, 김진희, 정종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9. 3.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15.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58,711,3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8,711,3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3. 15.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109,204,4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9,204,4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가 C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서 발급일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번호
1	2017. 3. 14.	2018. 3. 13. (최종 2023. 3. 10.까지)	85,000,000	D
2	2021. 1. 18.	2026. 1. 16.	19,000,000	E

나. C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22. 4.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6,500,000원을, 2022. 6. 30. F은행으로부터 19,000,000원을 각 대출받고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22. 4.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2022. 8. 8.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77,894,706원을, F은행에 대출원리금 19,058,87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1998. 1. 6. C과 혼인하였다가 2022. 2. 25. 협의이혼하였는데, C은 2022. 3. 15.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15.자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21. 2. 3. 채권최고액 280,8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2. 3. 2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2022. 3. 25. 채권최고액 293,7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가 2022. 12. 7. C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23. 1. 3.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203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체결 후인 2022. 8. 8.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C 사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체결 이후 약 1개월 만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후 약 5개월이 지나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승계참가인이 양수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23. 7. 4.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위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채무승인 및 조정확약(이하 '이 사건 조정확약'이라 한다)을 하였으므로 이를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무승인 및 조정확약의 근거가 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채무조정방식의 하나로 채무 감면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호에서 사해행위에 따른 소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협약과 C과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채무승인 및 조정확약서(을 제1, 2호증)에는 '신용지원협약'과 같은 개인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 변제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이 없고, 다만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3개월(3회차) 이상 연체하는 등의 경우 분할상환약정에 따른 모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채무잔액에서 채무조정 이후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즉시 상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확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 감면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다만 C이 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채무 감면의 효과가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조정확약을 통해 C의 채무를 61,261,336원으로 감면해주었고, 이에 따라 C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23. 7. 5.부터 2023. 11. 2.까지 합계 2,550,000원(= 월 510,000원 × 5회)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C이 위 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위 채무 감면의 효과가 상실되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감면된 채무액 61,261,336원에서 C이 변제한 2,5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711,336원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C의 무자력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체결 당시 C이 중소기업은행과 F은행에 대하여 1.의 가.항 기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I,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 사해행위의 성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와 C의 이혼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에 해당하고, 설령 가장이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과다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두 자녀 양육비, 학자금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장이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이 2022. 2. 25. 협의이혼신고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고 그 직후인 2022. 4. 11. C이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C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와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C이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C과 피고는 1998. 1. 6. 혼인하여 약 24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22. 2. 25.경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위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가사노동, 자녀들의 양육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재산분할의 비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등뿐만 아니라 후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 분할 대상 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없는 유무형의 재산이 있는지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과 혼인생활로 이룩한 공동재산 중 1/2 상당을 분할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한 것은 협의이혼에 따른 상당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양도하는 것은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재산분할로서 위 초과 부분(1/2 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한편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1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이외에 C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위 채무들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해의사

C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체결 당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는데, C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마.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후 피고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G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H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및 G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22. 3. 28. G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238,319,518원(= 790,074,218원 + 68,245,30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2023. 10. 3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421,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 역시 위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21,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238,319,518원을 공제한 금액인 182,680,482원(= 421,000,000원 - 238,319,518원)의 1/2에 해당하는 91,340,241원이 앞서 본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피고의 이익액 중 가장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원고승계참가인의 피보전채권액이 58,711,336원이 위 가액배상의 한도액 91,340,241원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위 58,711,3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58,711,3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8,711,3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C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별지